

성희롱·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최종안 보고

<18.6.21.(목), 범정부 성희롱·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점검총괄팀>

- ◆ 우리부에서 4월에 발주하여 용역 추진한 ‘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’에 대해 1차 검수 (5. 30.)시 차관님께서 보완지시하신 ‘기관장·사업주 의무 부분 추가, 사유별 징계내용 수록, 성폭력 사건처리절차를 간단히 하고 중징계를 고려할 필요, 사건처리 시 조직내에서 범하기 쉬운 실수를 간단히 추가 할 것’에 대해 매뉴얼 내용 보완하여 제출하였기 보고합니다.

□ 직장내 성희롱·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 개요

- **(목적)** 직장내 업무담당자 및 관리자의 성희롱·성폭력 사건처리 전 과정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 마련
- **(연구내용)** 성희롱·성폭력 사건처리 전 과정에 대한 상세절차 및 방법 제시
 - ※ 대상 : 정부, 공공기관, 민간사업장 포함
 - ※ 방법 : 문헌연구 및 관련법률 검토, 자문회의 또는 간담회
- **(사업기간)** ‘18.4월~’18.5월
- **(세부내용)**
 - (용어정의) 성희롱, 성폭력, 2차피해에 대한 정의 및 판단기준
 - (처리절차) 분야별(성희롱, 성폭력), 주체별 사건처리 절차에 대한 흐름도 및 상세설명 기술
 - (Q&A) 분야별, 절차별 사례중심 참고자료 수록
 - (서식제공) 단계별 필요서식 수록
- **(활용계획)**
 -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담당자의 업무지침으로 활용
 -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수립 기초 자료 제공

□ 차관님 지시사항 보완 내역 및 연구자 의견

- (‘피해자가 직속상사에게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부분은 비현실적이다’라는 의견에 대해)
 - 연구자의견 : 비현실적이지 않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직속상사에게 상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.
- (관리자가 인지하면 고충상담원에게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?)
 - 매뉴얼 61~62페이지에 수록하였음.
- (기관장·사업주의 의무가 더 많아야 할 것으로 보임)
 - 매뉴얼 58~60페이지에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 등을 포함하여 보완하였음.
 - 최종 수정 시 기관장 및 사업주의 성희롱 금지의무, 피해자 보호조치 및 사실관계 확인 시 행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가해자 조치에 대한 피해근로자의 사전 의견청취 등의 의무를 추가 기재토록 수정요구 함.
- (성희롱 유형별 가해자 처벌 사례 수록)
 - 매뉴얼 52~53페이지에 해고부분에 대한 사례를 Q&A 형식으로 수록하였음.
 - 연구자의견 : 감봉, 정직 등은 적절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며, 최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성희롱을 사유로 정직 감봉처분을 한 것이 과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 수록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의견임.
- (성폭력 사건처리절차를 간단히 기재,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고려가 필요)

- 매뉴얼 52~53페이지에 수록 됨.

○ (사건처리 시 조직내 범하기 쉬운 실수 부분을 추가)

- 매뉴얼 파트별 관련 사례를 Q&A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음.

붙임 : 직장내 성희롱·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최종본 1부. 끝.